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2-110
----------	--------

제출년월일 : 2012. 11.

제출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정이유

대다수가 극빈층인 영구임대아파트의 주민이 부담하는 공동 전기료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더불어 잘사는 따뜻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함.

2. 주요내용

- 가.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 지원 근거 마련
(안 제4조제1항제2호)
- 나.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의 지원에 대한 심의 생략
(안 제10조제1항제5호)
- 다.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비율 규정
(안 제10조제3항 별표 1)
- 라.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 지원금에 대한 상한액 제외 규정
(안 제10조제3항 별표 1)

3. 조례안 : 따로붙임

4. 예산조치 : 약 60,000,000원 (2013년도 예산편성안에 반영)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택법」 (법률 제11243호 2012. 1. 26.)

나. 합 의 : 해당사항없음

다. 규제여부 : 해당사항없음

6.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 : 2012. 11. 13 ~ 2012. 11. 18 (제출된 의견 없음)

나. 부패영향 자율평가 검토결과 [감사담당관-11323 (2012.11.14)]

-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 100% 자치구 부담은 영구 임대아파트 주민에 대한 특혜 발생 가능성이 있으나, 조도개선 방안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생명존중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추진 사항이므로 주관부서 개정안 동의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결과 : 가정복지과 - 44685 (2012.11.16)
: 해당없음

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012 .11 .20.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타목을 파목으로 하고,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

제10조제1항제5호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의 지원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별표 1]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 중 1. 지원비율 나목을 별지와 같이 하고

4. 지원금의 상한액 본문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는 지원금 상한액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

(제4조제1항 관련)

1. 지원비율

가. 공동체 활성화 사업 (생략)

나.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제4조제1항제2호의 각목>

지 원 사 업	자치구 분담률	공동주택 분담률	비 고(증감률)
1. 옥외 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	60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체 활성화 등의 평가점수에 따라 제2호와 같이 지원금 증감 300세대미만 의무관리대상 지원금의 5% 증액 소형 임의관리대상(100세대 이하)은 지원금의 5% 증액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비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
2. 경로당의 보수	60	40	
3. 실외 운동시설의 보수	50	50	
4.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는 공동실내체육시설의 설치·개선	50	50	
5. 장애인 편의시설 및 에너지절감시설의 설치·개선	50	50	
6.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 및 관련시설 설치·개선	50	50	
7.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	50	50	
8. 옥외주차장의 증설 및 보수	50	50	
9.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시설, 택배시설의 설치 개선	50	50	
10. 에너지절약 및 절수 시설의 설치 개선	50	50	
11. 주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50	50	
12.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	60	40	
1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0	50	

2.~ 3. (생략)

4. 지원금의 상한액

동일한 관리주체에 연간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은 제1호(지원금의 지원비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지원예산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고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다시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단,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는 지원금 상한액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5. (생략)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제3조의 공동주택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p> <p>1. (생략)</p> <p>2.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다. 다만, 하자보수비용의 지원은 해당 공동주택건설 사업주체의 하자 보수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한다.</p> <p>가. 주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p> <p>나. 옥외 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p> <p>다. 경로당의 보수</p> <p>라. 실외 운동시설의 보수</p> <p>마. 인근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공동실내 체육시설의 설치·개선</p> <p>바. 장애인 편의시설 및 에너지절감시설의 설치·개선</p> <p>사.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 및 관련시설 설치·개선</p> <p>아.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p> <p>자. 옥외주차장의 증설 및 보수</p> <p>차.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시설, 택배시설의 설치·개선</p> <p>카. 에너지절약 및 절수 시설의 설치 개선</p> <p><신 설></p> <p>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제4조(지원대상) ① -----</p> <p>-----</p> <p>-----</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2. -----</p> <p>-----</p> <p>-----</p> <p>-----</p> <p>-----</p> <p>가. -----</p> <p>나. -----</p> <p>다. -----</p> <p>라. -----</p> <p>마. -----</p> <p>-----</p> <p>바. -----</p> <p>-----</p> <p>사. -----</p> <p>-----</p> <p>아. -----</p> <p>자. -----</p> <p>차. -----</p> <p>-----</p> <p>카. -----</p> <p>타.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p> <p>파.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현 행

제10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 4. (생략)
 - 5. 그 밖의 공동주택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안전으로 회의에 올리는 사항.
- (단서 신설)**

② (생략)

[별표 1]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
(제4조제1항 관련)

- 1. 지원비율
 - 가. 공동체 활성화사업 (생략)
 - 나.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사업 <제4조제1항제2호의 각 목>

지 원 사 업	자치구 분담률	공동주택 분담률	비 고
1. 옥외 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	60	40	공동체 활성화 등의 평가점수에 따라 제2호와 같이 지원금 증감
2. 경로당의 보수	60	40	
3. 실외 운동시설의 보수	50	50	
4.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는 공동실내 체육시설의 설치 개선	50	50	
5. 장애인 편의시설 및 에너지절감시설의 설치 개선	50	50	
6. 차전거도로 차전거주차 및 관련시설 설치 개선	50	50	
7.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 보강	50	50	
8. 옥외주차장의 증설 및 보수	50	50	
9.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시설, 택배시설의 설치 개선	50	50	
10. 에너지절약 및 절수 시설의 설치 개선	50	50	
11. 주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50	50	
<신 설>			300세대미만 의무관리대상 지원금의 5% 증액
1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0	50	소형 임의관리 대상(100세대 이하)은 지원금의 10% 증액

- 2. ~ 3. (생략)
- 4. 지원금의 상한액
동일한 관리주체에 연간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은 제1호(지원금의 지원비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지원예산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고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다시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신설>
- 5. 지원제외 대상 (생략)

개 정 안

제10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 4. (현행과 같음)
 - 5. -----

- 단,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의 지원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별표 1]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
(제4조제1항 관련)

- 1. 지원비율
 - 가. 공동체 활성화사업 (현행과 같음)
 - 나.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사업 <제4조제1항제2호의 각 목>

지 원 사 업	자치구 분담률	공동주택 분담률	비 고
1. 옥외 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	60	40	공동체 활성화 등의 평가점수에 따라 제2호와 같이 지원금 증감
2. 경로당의 보수	60	40	
3. 실외 운동시설의 보수	50	50	
4.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는 공동실내 체육시설의 설치 개선	50	50	
5. 장애인 편의시설 및 에너지절감시설의 설치 개선	50	50	
6. 차전거도로 차전거주차 및 관련시설 설치 개선	50	50	
7.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 보강	50	50	
8. 옥외주차장의 증설 및 보수	50	50	
9.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시설, 택배시설의 설치 개선	50	50	
10. 에너지절약 및 절수 시설의 설치 개선	50	50	
11. 주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50	50	
12.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	60	40	중양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1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0	50	

- 2. ~ 3. (현행과 같음)
- 4. 지원금의 상한액
동일한 관리주체에 연간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은 제1호(지원금의 지원비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지원예산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고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다시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단,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는 지원금 상한액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 5. 지원제외 대상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대다수가 극빈층인 영구임대아파트의 주민이 부담하는 공동전기료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더불어 잘사는 따뜻한 분위기 조성을 위함.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 안 제4조제1항제2호 타목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 신설
 - 안 제10조제3항 [별표 1]- 공동전기료 구 60% 분담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해당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2013년도 소요예산(안) : 60,000,000원

- 공동 전기료 산출내역 : 약 100,000,000원 (년간)

$$\frac{7,297,220\text{원}}{(3\text{년 월평균})} \times 12\text{월} + 8,756,660\text{원} = 96,323,300\text{원}$$

(전기료 10% 인상예정액)

- 소요예산액 : $\frac{96,323,300\text{원}}{(\text{예산액})} \times 60\%/100\% = 57,793,980\text{원}$
(구 부담금)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도시관리국 주택과 박미숙
연 락 처	02-3153-9306